

##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3.2.10. 보도자료 “외환제도 개편방향 발표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을 통하여, 민간중심의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선진 외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동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23. 6. 8.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 6. 28.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 해외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 (2)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4)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 시장 참여 허용 및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위 (1)~(2)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기존 자본거래 관련 신고의무를 상당수 완화한바, 이를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 내용

#### 가. 자본거래 관련 신고의무 완화

##### (1) 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개정안에서는 해외 송·수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이 연간 미화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되었으며(개정안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거래 사전 신고의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개정안 제7-2조 제8호 및 제9호).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달러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시 개정안에서도 현행 규정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 Related Areas

기업법무 및 금융  
금융규제

### Contact

신동찬 변호사  
02-528-5356  
tcshin@yulchon.com

이희원 고문  
02-528-5065  
heeweonlee@yulchon.com

최홍준 변호사  
02-528-5766  
hongjunchoi@yulchon.com

김푸른솔 변호사  
02-528-5721  
prskim@yulchon.com

고명신 변호사  
02-528-5171  
mskoh@yulchon.com

## (2)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 신고 축소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i) 기획재정부 내지 한국은행 신고, (ii) 외국환은행 신고, (iii) 신고 예외의 형태로 구분하여 차등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중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의 경우 주로 소액거래 등 대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중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 신고 제도를 유지하여 국민과 기업의 거래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외국환은행 사전 신고 유형의 상당수를 폐지하고 이를 대부분 사후 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신고사항이 사후 보고로 전환 축소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유형	개정내용 (기존 사전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법인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보고(다만, 미화 5천만 불 초과 차입 시 기재부장관에 사전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법인 내지 해외지점의 현지금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 후 1개월 이내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 후 1개월 이내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후 1개월 이내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권 또는 회원권 매입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후 1개월 이내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 보고 또는 신고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또는 행위 후 1개월 이내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초과 송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li> </ul>

### (3) 해외직접투자 사후 부담 대폭 완화

기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 시 신고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내지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외 송금 보고, 증권취득보고, 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및 회수의무 등의 수시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사후관리 절차도 복잡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 정기보고를 하는 것으로 통합하며, 정기보고 내용도 간소화하였습니다.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기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등의 절차 이전 지급 가능한 금액 기준</li> <li>일반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의 변경</li> <li><b>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양수인)</b></li> <li>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 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및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li> <li>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의무</li> <li>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li> <li>변경보고 기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화 1만불 범위 내</li> <li>사전신고</li> <li>사전신고</li> <li>1개월 이내 사후보고</li> <li>해외직접투자시 첨부하여 신고 기관에 제출</li> <li>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li>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화 5만불 범위 내</b></li> <li>모두 사후보고로 전환</li> <li><b>발생사유 3개월 이내 보고</b></li> <li><b>3개월 이내 사후보고</b></li> <li>제출의무 삭제</li> <li><b>회계기간 종료 후 1년 이내</b></li> <li><b>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정기보고의 개념으로 생각됨)</b></li> </ul>

## 나. 기타 외환거래 관련 부담 완화

### (1) 차입신고 기준 완화 및 현지금융 별도규제 폐지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누계 3천만달러에서 연간 5천만달러로 상향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5천만 달러 이내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은행 보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차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사전 신고 필요)하였습니다(개정안 제7-14조).

또한 개정안은 현지금융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금전대차 보증으로 통합하고(개정안 제1-2조, 제2-8조),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7-14조, 제7-14조의2, 제8-1조 내지 제8-5조).

###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비은행의 다양한 외환서비스 제공 기회와 외환분야 역량 확대를 위하여, 개정안은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 외에도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의 일반 국민 법인 대상 일반 환전을 허용하였습니다(규정 제2-14조, [별표 1]).

### (3) 외국인투자자의 추가 계좌개설 없는 제3자 FX 허용

외국인투자자가 추가로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타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개정안 제7-37조).

### (4)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 다양화 및 외환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증권금융회사를 외국환중개사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안 제2-4조).

### (5)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업계·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적용 및 해석, 향후 외환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추가되었습니다(개정안 제10-23조).

## 2. 시사점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방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의 경우, 기존 보도자료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금번 개정으로 상당수의 외국환은행 사전신고사항이 사후 보고사항으로 완화된바 관련 거래당사자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를 진행하는 거래당사자 및 관련 담당자의 경우, 금번 개정안에 따른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축소 완화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거래에 필요한 신고 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아직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향후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Disclaimer

이상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및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없이 이에 의존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귀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단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법무법인(유) 율촌은 위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